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 및 종목 등 과세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48조의13 신설).

II. 검토의견

안 제48조의13 본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은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일부 물품(ex. 귀금속 제품, 고급 가방·시계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 또는 환급하는 규정에 해당하고, 면세물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의 적용 또는 환급에 관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이므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¹⁾를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내용을 주서에 반영하였음.

개정안	수정의견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u>그 밖의</u>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 ---- <u>그 밖에</u> -----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한편, 국세청은 안 제48조의1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과세정보 제공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제2호의 “사업장의 업태 및 종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명칭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주업태 및 주종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²⁾, 제3호의 “즉시환급 가능 여부”는 현재 국세청이 면세판매자로부터 즉시환급 물품 판매 실적을 제출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는 정보 또한 “즉시환급 실적 제출 여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³⁾.

그런데 안 제48조의13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은 안 제48조의13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현황

업 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요소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업종 코드		

- 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부가가치세 신고) ⑤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의4(즉시환급 물품 판매 실적 명세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3. 물품판매 명세

⑫ 일련 번호	⑬ 구매 일련 번호	⑭ 판매일자	⑮ 반출승인 번호	⑯ 세금포함 판매가격	⑰ 부가가치세	⑱ 즉시환급 상당액	⑲ 구입자	
							성명	국적

의 본문 규정에 비추어 “면세판매장”을 의미하므로 국세청에 협조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즉시환급 실적”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4)에 따라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한 실적을 약칭한 것으로 법률에 정의된 내용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법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내용을 주서에 반영하였음.

개정안	수정의견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1. 상호 2. <u>사업장의 소재지, 업태 및 종목</u> 3. <u>즉시환급 가능 여부</u> 4.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1. ----- 2. <u>면세판매장의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u> 3. <u>즉시환급 실적(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출 여부</u> 4. <u>면세판매장의</u> -----

4)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전문위원 이 화 실)